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12.(월)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9. 24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9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년10월12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건강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7,610백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의료원

다. 동의사항

○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: 7,610백만원

-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: 6,450백만원
- 백령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: 1,160백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“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”은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7조[1]와 「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[2] 및 제10조[3]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또한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[4]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제출됨.

---

1) **제17조(보조금 등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2) **제9조(기금과 보조금 등)** ①의료원은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 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.

3) **제10조(지방비의 부담)**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진료 가액의 차액을 **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.**

4) 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<개정 2014.5.28.>

○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,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'보조금'[5]과는 차이가 있음.

○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, 행려환자, 증증환자 치료비 지원과 약제비 및 의료 재료비 보전 등의 운영비 총 76억 1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- 인천의료원 출연 현황(본예산 기준)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20년	2019년	2018년	2017년
출연금	7,610	7,610	5,979	4,659

5) **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**"보조금"이란**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(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), 부담금(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),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<인천광역시의료원 2021년 출연계획안>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금액	사업내역	비고
계	7,610		
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6,450	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, 행려환자,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시비 100%
백령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1,160	의료취약지역 백령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지원	시비 100%

○ 산출내역 (단위 :천원)

사업명		예산액	산출내역
인천의료원	진료수가 차액보전	190,950	。8,577명 × 22,263원
	무상진료사업	184,000	。총39회 1,610명 무상진료
	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	1,383,955	。35,000명 × 39,541원
	행려환자,외국인진료비지원	329,095	。1,782명 × 172,940원(행려환자) 。1,529명 × 13,680원(외국인)
	의료원 운영지원	3,362,000	。약품비등 지원 (1,980백만원) 。'20년 코로나19로 미루어진 기능보강사업 진행 관련 수입 감소 운영금액 보전 (1,382백만원)
	공공의료특화사업(인천손약손)	1,000,000	。700명×500,000원(무상수술) 。1,100명×680,000원(암환자지원)
백령병원 운영지원		1,160,000	。약품비, 재료비 등 지원
합 계		**7,610,000**	

○ 2021년도 출연금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이 13억 8천만원, 기능보강사업 진행관련 수입 감소 운영금액 보전 13억 8,200만원을 포함한 의료원 운영비 지원 33억 6,200만원,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 추진 10억원 등에 따른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이병래, 박인동, 김준식, 전재운 위원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부.

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21

제출연월일 : 2020. 9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7,610백만원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○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의료원

3. 동의사항

○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: 7,610백만원
-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: 6,450백만원
- 백령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: 1,160백만원

4. 세부내용 : 붙임

○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 1부.
○ 관계법령 1부. 끝.

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

❖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무상진료 및 중증환자치료 사업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한 저소득층 중점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

❖ 운영비 보전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출연대상

○ 기　　관 : **인천광역시의료원**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
- 시설규모 : 지하2층, 지상7층(대지 16,239㎡, 건물 30,412㎡)
- 병 상 수 : 75실 295병상
- 진료과목 : 20개 진료과
- 근무인력 : 470명(의사 40, 간호사 227, 약사 3, 일반 200)

○ 기　　관 : **백령병원(인천광역시의료원 분원)**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
- 시설규모 : 지하1층 지상2층(대지 16,353㎡, 건물 4,002㎡)
- 병 상 수 : 8실 30병상
- 진료과목 : 8개 과목
- 근무인력 : 39명(의사10(공보의 8명 포함),간호사8, 일반21)

□ 2021년 출연계획

○ 총 규 모 : 7,610백만원

○ 세부내역

<단위:백만원>

사 업 명	금액	사업내역	비고
계	7,610		
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6,450	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, 행려환자,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시비 100%
백령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1,160	의료취약지역 백령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지원	시비 100%

□ 향후계획

○ 2021년 본예산 상정 : 제266회 제2차 정례회시

○ 출연금 교부 : 2021년 중

○ 2022년 이후 :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 운영 상황 고려 출연금 지원 규모 조정

【 참고자료 】

○ 인천의료원 출연 현황(본예산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0년	2019년	2018년	2017년
출연금	7,610	7,610	5,979	4,659

* 2020년도 1회 추경 시 10,000백만원 추가 출연

○ 인천의료원 손익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
수입	계 ①	53,363	45,986	44,896	42,084
	의료수입	37,479	33,867	34,403	34,602
	의료외수입	15,884	12,119	10,493	7,482
비용	계 ②	50,045	46,164	46,000	43,720
	의료비용	45,662	41,992	42,240	41,414
	의료외비용	4,383	4,172	3,760	2,306
당기순손익①-②		3,318	△178	△1,104	△1,636

○ 백령병원 손익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
수입	계①	2,757	2,608	2,214	2,135
	의료수익	1,158	1,042	908	1,078
	의료외수익	1,599	1,565	1,305	1,057
비용	계②	2,470	2,355	2,024	2,045
	의료비용	2,436	2,327	2,001	1,978
	의료외비용	34	28	23	67
당기순손익①-②		287	253	190	90

관련법령

▢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7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·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▢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9조(기금과 보조금 등) ①의료원은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 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방비의 부담)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 하는 진료가액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진료 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.